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166호
2. 발 의 자 : 황철규 의원 등 31명
3.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5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II.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 학생과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 따라 두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2023.6.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제3조).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6조).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나 진단검사 등의 추진에 있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 폐지와 관련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부칙 제2조~제3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15일 황철규 의원 등 31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2166호로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밀하게 추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 구간 지능(IQ 71~84)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정의가 없어 복지정책이나 공적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¹⁾
- 최근 경계선지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입법 활동 등이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고,²⁾³⁾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관련 입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 관계부처 합동(2024.07.03.),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제1376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3인 발의, 의안번호 제3025호),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철승의원 등 22인 발의, 의안번호 제3315호) 등이 발의되어 있으며 현재 교육위원회 또는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임.

3)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누적) : ('20) 1개 → ('21) 4개 → ('22) 12개 → (~'24.7) 93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4.07.03.),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1쪽.)

- 다만, 그 이전부터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경계선지능 학생과 유사한 학생을 학업 중단 학생과 함께 ‘학습부진아’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서울시의회 역시 해당 법률에 따라 2017년 7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습부진아의⁴⁾ 실태 조사와 판별 및 위탁 교육의 근거 등을 마련했었습니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학생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국회에서는 학업 유지를 위해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포함하고자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지원 및 교육·치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⁵⁾
 - 따라서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시책의 추진 근거가 보완되면서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폐지를 전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의 자문과 사업 추진 근거, 그리고 「초·중등교육법」과 이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에 새로운 근거가 마련된 사항⁶⁾

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에서 정의하는 학습부진아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은 제외되어 있음.

5)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6)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법 제29조제3항 신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계획 수립·시행(법 시행령 제54조의3 신설) 등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에 대한 검토(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서울시 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이어 안 제2조는 경계선지능을 특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지만 성격 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학습이나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인지능력 상태로 규정하고, 경계선지능 학생을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⁷⁾ 학업중단학생과 학업중단 위기 학생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성격장애 등으로 학습에 제한을 받는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을 종합했을 때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시책 추진 의무를 명확하게 따르고 있음을 밝히고, 경계선지능과 경계선지능 학생의 의미가 상위법령과 합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2)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때 추진목표와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의 대상 및 방법,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와 보호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목표와 내용, 자원 조달 방안 등이 유기적이고 짜임새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입법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특히,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와⁸⁾ 비교했을 때 ‘진단검사의 대상과 방법, 시기, 경계선지능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 과 ‘교원 연수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계선지능 진단의 내실화와 현장 전문성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심층 전문검사 시행 및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3항 등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운영,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할 수

8)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안 제2항은 학교장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위탁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안 제3항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 교원에게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지원 등을 하기 위한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기시행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 교원 연수 등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으로⁹⁾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조문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되어 이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 새로 신설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4) 위탁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이나 진단검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규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9) 서울학습도움센터(2020.08.),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가이드북 1」, 서울학습도움센터(2021.0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가이드북 2」

5) 자문에 대한 검토(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의 시행·평가 등에 있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6호에 근거해 구성된 교육감 소속 자문 위원회로,¹⁰⁾ 학습 부진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2011년 3월 설치되었으며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¹¹⁾
- 해당 위원회는 2024년 현재 전원이 교장과 교감, 교사, 시의원 및 학계 관계자, 교육 관련 단체 관계자 등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1]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2024.10.1. 기준)¹²⁾

위원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업	구성별	위촉기준
위원장	김○○	○○대학교	교수	위촉직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위원	이○○	○○교육대학교	교수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위원	손○○	○○대학교	교수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위원	조○○	○○대학교	교수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부위원장	강○○	서울○○○초등학교	교장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위원	오○○	○○중학교	교장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위원	김○○	서울○○초등학교	교감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위원	서○○	○○○○○○○○고등학교	교사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위원	박○○	○○○ 서울지부	지부원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10)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11)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9번 붙임 2 자료, 정책기획관 제출, 2024. 10. 제출).

12) 2024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9번 붙임 2 자료, 정책기획관 제출, 2024. 10. 제출)에서 위원 개인의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처리한 것임.

위원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업	구성별	위촉기준
위원	조○○	○○○학부모회 남부지회	지부장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위원	송○○	○○○○○○○○○○ (학교밖청소년 관련 단체)	대표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위원	박○○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시의회 추천
위원	김○	○○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센터장		기타
위원	양○○	○○대학교	교수		기타
위원	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기타

○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동 자문위원회가 경계선지능 학생 시책 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동 조문 신설에 따른 별도 문제 역시 없다고 판단됩니다.

6)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검토(부칙 제2조~제3조)

○ 안 부칙 제2조는 동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안 부칙 제3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 이는 2022년 12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2023.6.28.시행)¹³⁾에 따라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되고, 그 범위에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추가되면서 조례상 용어 수정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13)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표-2]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적용 대상 변화

개념	세부 구분	적용 대상에 따른 현행 자치법규 현황
(개정 전) 학습 부진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학업 중단 학생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 대안교육 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 저하 등으로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학업 중단 학생	→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학업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학업중단학생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계선지능으로 정의하여 개별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이미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중 ‘학업 중단 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개별 조례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특히, 현행 조례는 정의된 경계선지능 학생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의 학습부진아의 정의가 사실상 동일하고, 세부 사업별 추진 근거가 두 조례로 나누어져 있어 조례의 명확성이나 신뢰, 법적 안정성이 다소 저하되는 측면도 존재해왔습니다.

- 예컨대, 학습부진아 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현행 조례에만¹⁴⁾ 근거가 있는 반면, 학습부진대책자문

위원회의 자문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에만 명시되는 등 사업이나 행위별 추진 근거가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더욱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는 그 대상을 「구(舊)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으로 한정하면서도, 그 용어는 제28조제1항의 적용 대상 전체를 의미하는 ‘학습부진아’를 사용함에 따라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표-3] 개별 법령 및 조례별 학습부진아 등의 정의 규정 비교

법령 및 조례	정의 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4. 19.] [법률 제18993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현행)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습부진아”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의 전문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령 및 조례	정의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수교육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지만,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이나 생활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인지능력 상태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이에 동 부칙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에 따른 용어 정비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인바, 개정 입법의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¹⁵⁾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송여정(2180-8265)
----------	----------------	-------	----------------------------------

15)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11948, 2024.10.30.)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21. 3. 23., 2022. 12. 27.>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7.>
-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22. 12. 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29호, 2024. 10. 8., 일부개정]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⑤ 삭제 <2017. 5. 8.>

⑥ 삭제 <2017. 5. 8.>

⑦ 삭제 <2023. 6. 27.>

⑧ 삭제 <2023. 6. 27.>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제54조의3(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6. 27.]